

결혼 20년넘은 배우자 상속세 완전 면제키로

91.4.18

당정 추진 9급 공무원 채용 성차별 없애

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여성 지위향상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당정은 또 입법예고된 영아보육법 시행령 가운데 1천명 이상 여성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 한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5백명 이상 고용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.

당정은 남여를 차별해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는 9급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를 폐지 하는 한편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

데 보훈연금 수혜범위를 현재의 배우자·직계비속 남자·부모에서 직계비속 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.

당정은 이밖에 농어촌 여성의 출산시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.